[공모펀드 변경안내]

가. 펀드명 :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나. 변경시행일 : 2017년 8월 10일(목)

다.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라. 주요 변경 내용 :

1) Class C-Pe2(퇴직연금 가입자 온라인 가입 전용) 신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신 설>	Class C-Pe2 (BV445)
요약정보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의 "※ 주석사항"	주1) 생략된 종류[Class]: Class A-E, C-F, C-P1, C-P2, C-Pe, S-P1	주1) 생략된 종류[Class]: Class A-E, C-F, C-P1, C-P2, C-Pe, S-P1, C-Pe2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종류 C-P2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종류 C-P2 및 C-Pe2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 설>	Class C-Pe2 (BV445)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좌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1좌(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 설>	Class C-Pe2 (BV44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 설>	1) Class C-Pe2(퇴직연금 가입자 온라인 가입 전용) 신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6. 집합투자기구의 구	<신 설>	Class C-Pe2: 판매회사의 온라인(On-

조, “나. 종류형 구조”		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환매”, (5) 환매수수료	〈신 설〉	Class C-Pe2 : 환매수수료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 설〉	■ 명칭 : Class C-Pe2 - 가입자격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전환수수료 :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 설〉	■ 명칭 : Class C-Pe2 - 집합투자업자보수 : 0.65 - 판매회사보수 : 0.32 - 신탁업자보수 : 0.03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2 - 총보수 • 비용 : 1.0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 설〉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Class C-Pe2 신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신 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의 "※ 주석사항"	주1) 생략된 종류[Class]: Class A-E, C-F, C-P1, C-P2, C-Pe, S-P1	주1) 생략된 종류[Class]: Class A-E, C-F, C-P1, C-P2, C-Pe, S-P1, C-Pe2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종류 C-P2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종류 C-P2 및 C-Pe2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13. (생 략) <신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2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생 략) 1. ~ 13. (생 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2 수익증권
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생 략) 1. ~ 13. (생 략)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2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13. (생 략) <신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Class C-Pe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